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-1481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25일

송 파 구 청 장

1. 제정이유

가.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,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지원 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라.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(수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(참조: 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고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(☎ 02-2147-31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제정(안)	찬 · 반 여부	사 유

○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의견 제출처

- 주 소: (우 05552)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(신천동) 신관 6층
교통과

- 연 락 처: Tel. 02-2147-3120(이메일: syjh1127@songpa.go.kr)

※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(www.songpa.go.kr) 고시
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